경상북도

도보

www.gb.go.kr

선람	기관(부서)의 장

제6306호 2019년 2월 14일(목)

경 상 북 도

■ 고 시

○ 대가야의 木·金·土 꿈꾸는 시간여행자 센터 조성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9-44호) ····· 5

회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9-45호) ····· 13

○ 2018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안)
(경상북도 고시 제2019-46호) ····· 15

○ 홍소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 고시(안)
(경상북도 고시 제2019-47호) ····· 18

○ 문경시 공공하수도 설치 변경인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9-48호) ····· 21

■ 공 고

○ 구미3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 사업 준공인가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19-234호) ····· 25

○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19-238호) ····· 27

시 군

■ 고 시

○ 도시계획시설(도로:중1-134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구미시 고시 제2019-29호) ····· 29

○ 영천 대미지구 도시개발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시 고시 제2019-11호) ····· 35

○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문경시 고시 제2019-17호) ····· 42

○ 경산 도시관리계획(중산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중산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19-19호) ····· 58

○ 군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군위군 고시 제2019-9호) ····· 122

■ 공 고

○ 김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열람공고
(김천시 공고 제2019-261호) ····· 144

○ 군위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군위군 공고 제2019-153호) ····· 146

기 타

■ 공 고

○ 기계119안전센터 신축공사 타절 기성검사 현장 입회요청 통지
(포항북부소방서 공고 제2019-3호) ····· 152

◈◈◈

경상북도 고시 제2019 - 44호

대가야의 木·金·土 꿈꾸는 시간여행자 센터 조성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대가야의 木·金·土 꿈꾸는 시간여행자 센터 조성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19조·제23조 규정에 따른 구역 지정,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을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일괄 지정·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대가야의 木 ·金·土 꿈꾸는 시간여행자 센터 조성 지역개발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232-106번지 일원

다. 면 적 : 2,577.2㎡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가. 지정 목적

○ 역사 자원과 고령군 자연 자원을 일상 공간과 도시 활력의 자양분으로 활용

○ 도시가 축적하고 있는 고대 문화를 상상하고 체험하는 공간 조성

○ 대가야의 문화와 역사유산, 일상의 명소들의 연결 강화

나.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8년 ~ 2020년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 행 자 : 고령군수

나. 시행방식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 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가. 수질 보전

○ 공사 과정에서 강우시 토사 유출로 인한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가배수로 설치

나. 토양 보전

○ 공사차량·장비를 정기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무분별한 세차 금지로 공사차량에 의한 토양오염 방지, 공사장 폐유는 일괄 수거 후 위탁처리

다. 소음 진동 방지

○ 공사기간 중 중장비 및 공사차량의 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소음은 공사 차량 속도 제한 및 공정별 장비의 효율적 투입을 통해 최소화

라. 폐기물 처리방안

○ 소각대상 폐기물은 관내 운영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활용하여 전량 처리

○ 중간처리,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등을 위한 시설은 동일 부지 내 위치시켜 각 시설 간 이동물류를 줄임으로서 악취발생 최소화

5. 인구수용 · 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가. 인구수용계획

○ 이용객 수요는 인근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대가야박물관, 대가야 체험축제의 3개년 이용객 평균으로 추정하여 시설물 규모 결정

나. 교통처리계획

○ 대상지 남측에 중로2-3호선(왕릉로)이 위치하고 있어 시설물 준공 후 기존 중로 2-3호선을 이용하여 교통 수요 처리

다. 토지이용계획

○ 지역개발사업구역 : 2,577.2㎡

· 꿈꾸는 시간 여행자 센터 : 1,036.4㎡

· 친환경 주차장 : 1,540.8㎡

· 왕릉로 경관 정비 : 30m

6. 지역개발사업의 분할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해당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구 분	계	국비	지방비	비 고
금액(백만원)	1,618	1,218	400	-

나.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합계	1,618	1,218	400	402.8	300	102.8	597.2	300	297.2	618	618	-
꿈꾸는 시간 여행자 센터 조성	1,400	1,100	300	350	300	50	550	300	250	500	500	-
친환경 문화 주차장 조성	78	78	0	-	-	-	-	-	-	78	78	-
왕릉로 경관정비	40	40	0	-	-	-	-	-	-	40	40	-
지역 역량강화	100	-	100	52.8	-	52.8	47.2	-	47.2	-	-	-

9. 보건의료 · 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해당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세부 목록

○ 편입토지조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계				2,577.2	2,577.2		
1	대가야읍 지산리	232-4	답	1,310	1,310	고령군	시간여행자 센터
2	대가야읍 지산리	232-106	답	1,267.2	1,267.2	고령군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해당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대가야의 木·金·土 꿈꾸는 시간여행자 센터 조성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므로 사업 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14. 그 밖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2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1. 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가. 명 칭 : 고령군

나. 대표자 : 고령군수

다. 소재지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2. 지역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및 목적

가. 명 칭 : 대가야의 木 · 金 · 土 꿈꾸는 시간여행자 센터 조성 지역개발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232-106번지 일원

다. 목 적

○ 역사 자원과 고령군의 자연 자원을 일상 공간과 도시 활력의 자양분으로 활용

○ 도시가 축적하고 있는 고대 문화를 상상하고 체험하는 공간 조성

○ 대가야의 문화와 역사유산, 일상의 명소들의 연결 강화

3. 지역개발사업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가. 면 적 : 2,577.2㎡

나. 사업시행기간 : 2018년 ~ 2020년(3개년)

4.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제8항과 같음

3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고령군수

나. 주 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2. 사업의 명칭 · 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명 칭 : 대가야의 木 ·金· 土 꿈꾸는 시간여행자 센터 조성 지역개발사업

나. 목 적

○ 역사 자원과 고령군의 자연 자원을 일상 공간과 도시 활력의 자양분으로 활용

○ 도시가 축적하고 있는 고대 문화를 상상하고 체험하는 공간 조성

○ 대가야의 문화와 역사유산, 일상의 명소들의 연결 강화

다. 위 치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232-106번지 일원

라. 면 적 : 2,577.2㎡

마. 사업시행기간 : 2018년 ~ 2020년(3개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5.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제8항과 같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제11항과 같음

7. 지형도면 및 관련도서 열람방법

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나. 이해관계인은 아래 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 균형개발과 (☏ 054-880-3953)

○ 고령군 도시건축과 (☏ 054-950-6753)

경상북도 고시 제2019 - 45호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 신원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과수 수출단지 정비, 대형 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

2. (사업내용 및 구역)

지구명	위치		수혜면적 (ha)	사업비 (천원)	사 업 개 요	사 업 시행자
	시군	읍면				
신원 지구	영천	청통	50	1,626,000	암반관정(5Hp) 3개소, 저수조(50㎥) 2개소	영천시장

지구명	위치		수혜면적 (ha)	사업비 (천원)	사 업 개 요	사 업 시행자
	시군	읍면				
					송수관로(50mm) L=219m 급수관로(50mm) L=389m 급수관로(75mm) L=1,659m 급수관로(100mm) L=880m 배수로 L=465m 농로 L=1,258m B=4m	

3. (사업예정기간) 2018.12. ~ 2019.12

4. (사업효과) 저비용 고효율의 영농편의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5. (사업내용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의 세목조서) 사업시행기관에 비치된 사업계획서 및 조서와 같음

경상북도 고시 제2019-46호

2018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산 산림청 미고시 산림용 종묘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 2. 14.

경 상 북 도 지 사

□ **종묘가격(성묘(成苗))**

(단위 : 원/본)

가. 묘목

수종명	묘령	'18년산 사정가격	가	나	다	비 고
은행나무	성묘 2-0	1,099원/본	1,099원/본	1,102원/본	1,097원/본	산림청 심의안 참조 자체검토
호두나무	성묘 1-1	3,969원/본	3,966원/본	3,981원/본	3,961원/본	〃
느티나무	용기묘 1-1-1	2,694원/본	2,694원/본	2,694원/본	2,696원/본	〃

수종명	묘령	'18년산 사정가격	가	나	다	비 고
산벚나무	용기묘 1-1-1	2,779원/본	2,830원/본	2,756원/본	2,751원/본	〃
고로쇠나무	용기묘 1-1-1	2,776원/본	2,776원/본	-	-	〃
화백나무	용기묘 2-2	3,583원/본	3,586원/본	3,581원/본	-	〃
헛개나무	용기묘 1-0	917원/본	-	-	-	타시도 고시가 적용(강원도)

나. 대목(미세먼지 저감 조림용 큰나무)

수종명	규격	'18년산 사정가격	조달청	한국물가정보	한국양묘협회 경북지회	민간업체 Ⅰ	민간업체 Ⅱ
소나무	H 1.5 W 0.5	14,700원/본	132,600원/본	132,600원/본	14,700원/본	18,360원/본	19,210원/본
곰솔(해송)	H 1.5 W 0.5	17,000원/본	31,950원/본	31,000원/본	17,000원/본	18,360원/본	19,210원/본
잣나무	H 1.5 W 0.5	14,700원/본	20,000원/본	20,000원/본	14,700원/본	18,360원/본	19,210원/본
스트로브잣나무	H 1.5 W 0.5	18,000원/본	31,330원/본	30,000원/본	18,000원/본	30,000원/본	30,000원/본
전나무	H 1.5 W 0.5	18,000원/본	20,000원/본	20,100원/본	18,000원/본	20,100원/본	20,100원/본
편백나무	H 1.5 W 0.5	15,100원/본	16,780원/본	16,780원/본	15,100원/본	16,780원/본	16,780원/본

수종명	규격	'18년산 사정가격	조달청	한국물가정보	한국양묘협회 경북지회	민간업체 Ⅰ	민간업체 Ⅱ
느티나무	H 1.8 R 2.0	14,000원 /본	32,460원 /본	33,280원 /본	14,000원 /본	15,120원 /본	15,820원 /본
산벚나무	H 1.8 R 2.0	14,000원 /본	32,800원 /본	32,800원 /본	14,000원 /본	15,120원 /본	15,820원 /본
산수유	H 1.5 R 2.0	18,000원 /본	37,000원 /본	37,000원 /본	18,000원 /본	19,440원 /본	20,340원 /본
은행나무	H 1.2 R 2.0	14,000원 /본	60,000원 /본	60,000원 /본	14,000원 /본	15,120원 /본	15,820원 /본
자작나무	H 1.8 R 2.0	14,000원 /본	35,000원 /본	35,000원 /본	14,000원 /본	15,120원 /본	15,820원 /본
청단풍	H 1.8 R 2.0	15,000원 /본	36,720원 /본	36,720원 /본	15,000원 /본	16,200원 /본	16,950원 /본

※ 부대조건

- 본 묘목은 검사합격률 95%이상의 묘목에 대한 기준 가격임.
- 가격에는 묘목생산비의 2%에 해당하는 재해손비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에는 법정 의무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은 완전포장하고 소정의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 차도에서 인도하는 가격임.

□ 가격산정기준

- 종묘사업실시요령(산림청예규 제657호, 2017.5.25.)
- 2018년산 산림용 종묘가격(산림청고시 제2018-103호(2018.12.21.))
- 타시도 고시가격 적용
- 조달청 단가, 한국물가정보 및 시장조사가격 적용(최저가)

경상북도 고시 제2019 - 47호

홍소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 고시(안)

경상북도 고시 제2018-369호(2018.12.10.)로 세목 고시한 홍소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분할측량에 따른 편입면적이 변경되어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세목)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수자원 확보, 관개개선,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 재해예방

2. 사업내용 및 구역(변경없음)

가. 사 업 명 : 홍소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홍계리 일원

다. 수혜면적 : 214ha(신규194ha, 보강 20ha)

라. 사업개요

○ 수 원 공 : 저수지 1개소, 이설도로 1조 1,672m

○ 평 야 부 : 용수로 10조 23,484m

3. 사 업 비(변경없음) : 25,193백만원

4. 사업예정기간(변경없음) : 2011.05.11 ~ 2018.12.31.

5. 사업의 효과(변경없음) :

○ 편익비용비율(B/C) : 1.03%(5.5%할인시)

○ 내부투자 수익률(IRR) : 5.7%

○ 증산량(미곡환산) : 519.5ton (2,900.8ton→3,420.3ton)

○ 간접효과 : 용수로 및 도로개설, 재해예방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별첨

○ 당초 : 823필지 298,924㎡

○ 변경 : 823필지 298,926㎡ (증2㎡)

8. 수용 지장물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 별첨

9.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054-870-0532)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19 - 48호

문경시 공공하수도 설치 변경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

문경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존 탈리여액 처리공법은 현재 운영중인 하수처리시설의 유입부하율이 높아 탈리여액의 T-N처리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처리공법의 개선으로 유입부하율을 낮추어 운영의 안정화와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문경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부지면적 등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시설용량 (㎥/일)	처리공법	처리구역 면적(㎢)
점촌공공하수 처리시설 (탈리여액 처리시설)	문경시 영신동 103번지(점촌공공 하수처리시설 내)	66,308	30,000	생물학적 처리공정 (EBR 공법)	12.96

다. 사업시행기간 : 2019~2019년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조서와 같음

마. 기타 관계서류는 문경시 하수도사업소(054-550-844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구분	토 지 소 재 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동	지번						
계					66.308	66.308			
1	문경	영신	103	잡	54.741	54.741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	
2	문경	영신	97	잡	11.567	11.567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	

◈◈◈

경상북도 공고 제2019-234호

구미3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 사업 준공인가 공고

칠곡군 석적읍 중리 일원 「구미3국가산업단지 내 ㈜스타케미칼 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명칭 : 구미3국가산업단지 내 ㈜스타케미칼 부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스타케미칼 대표이사 김세권

나. 주 소 :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443-1번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443-1번지 일원

나. 면 적 : 105,791.8㎡

4. 준공인가연월일 : 2019. 2. 12.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산업시설용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관리기관과 협의 후 자체사용 및 실수요자에게 분양.

나. 공공시설용지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도로, 주차장, 공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킴.

다. 세부적인 관리처분 계획

구 분		면 적(㎡)	관리 처분계획	비 고
합 계		105,791.8		
유상공급 대상용지	소계	96,665.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 의거 자체사용 및 실수요자에게 임대·분양	
	산업시설용지	96,665.8		
무상공급 대상용지	소 계	9,1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 및 시설물은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주차장	2,080		
	공원	1,038		
	도로	6,008		

경상북도 공고 제2019-238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우헌 경제부지사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경 상 북 도 지 사

소속	경상북도	직위	경제부지사	성명	전우헌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 수 (주)				
본인	삼성전자	10,092	매각	407,121	2019.1.16	삼성증권
본인	삼성전자	4,908	매각	199,019	2019.1.17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6,000	매각	252,000	2019.1.17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우	2,000	매각	69,873	2019.1.17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5,250	매각	244,912	2019.2.1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우	1,550	매각	58,047	2019.2.1	삼성증권

◈◈◈

구미시 고시 제 2019-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1-134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구미시 신동 체육공원 도시계획도로(중1-134호)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구 미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 종류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규모	도시계획 결정일자	비고
도시계획 도로사업	신동 체육공원 진입도로(중1-134호) 개설공사	신동647-9번지	도로개설 L=188m, B=24m	경상북도고시 제5973호 (2015.10.15)	

2. 사업시행자

주 소 : 구미시 송정대로 55

성 명 : 구 미 시 장

3.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0.12.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 붙임과 같음

※ 관계서류 및 도면은 구미시청 도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면게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분할측량 후 편입면적 변동 될 수 있음)**

사업명 : 신동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 대장상 면적 (㎡)	편입 (예정) 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32,996	5,263						
1	신동	647-6	647-6	유지	377	37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	신동	647-9	647-9	유지	1,696	1,69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3	신동	647-8	647-8	유지	91	9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4	신동	160	160	도로	14,490	271	국(농림축산식품부)					
5	신동	359-4	359-4	답	104	104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매상길 96-9	장동희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구미강동지점)	농협은행 주식회사	근저당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대장상 면적 (㎡)	편입 (예정)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	신동	358-1	358-1	답	125	125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매상길 96-9	장동희				1/2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92, 101동 204호	장진혁				1/2
7	신동	329	329	구거	607	151	국(농림 축산식품부)					
8	신동	325-1	325-1	답	770	678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63길 63	장병기				
9	신동	325-4	325-4	답	438	438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 190 월드메르디앙 103동 903호	이희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 대장상 면적 (㎡)	편입 (예정) 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	신동	705-20	705-20	구거	394	84	국(농림 축산식품부)					
11	신동	323-3	323-3	전	242	242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63길 69	장점출				
12	신동	322-2	322-2	전	343	327	경상북도 구미시 백산로 199-1, 가동 206호	강옥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11길 16	구미새마을금고	근저당 지상권	
13	신동	671-5	671-5	전	552	33	경상북도					
14	신동	672-1	672-1	답	33	3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가산로 473-4	정명수				
15	신동	672-4	672-4	답	209	87	경상북도					
16	신동	721-1	721-1	도로	4,793	65	국(건설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 대장상 면적 (㎡)	편입 (예정) 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7	신동	721	721	도로	5,564	113	국(건설부)					
18	신동	672-2	672-2	창고 용지	360	40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가산로 473-4	정명수				
19	신동	672-5	672-5	답	63	62	경상북도					
20	신동	322-1	322-1	전	364	179	경상북도					
21	신동	321	321	답	30	10	경상북도					
22	신동	325-3	325-3	답	90	42	경상북도					
23	신동	705-42	705-42	구거	8	6	국(건설부)					
24	신동	705-43	705-43	구거	276	34	국(농림 축산식품부)					
25	신동	329-1	329-1	구거	977	5	국(농림 축산식품부)					

영천시 고시 제2019 - 11호

영천 대미지구 도시개발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 대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영 천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영천 대미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 : 기정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대미리 산2-19번지 일원

나. 면 적 : 기정 31,257㎡ → **변경 31,745㎡(증, 488㎡)**

다. 사 유 :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렛츠런파크 영천 개발로 인해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지역주민의 지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가. 시행자 : 영천시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년간

나.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 생략

7. 도시개발법 시행령제15조제1항 7의2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 : 붙임 (변경)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

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9. 도시개발법 법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가. 열람기간 : 시민열람 편의를 위해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공람

나. 장소 : 영천시청 도시계획과(☎ 054-330-6341)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본 항 중 아래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를 제외한 모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가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 고시된 것으로 보게 됨.

※ 금회 고시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변경이며, 기타 도시관리계획 사항은 확정측량 후 반영예정임.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1,257	증) 488	31,745	100.0	
자연녹지지역	488	감) 488	-		
제1종일반주거지역	31,257	증) 488	31,745	100.0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영천시 금호읍 대미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31,745	200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나.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영천대미지구 도시개발구역	영천시 금호읍 대미리 산2-19 일원	31,257	증) 488	31,745	면적 증가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영천대미지구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구역 변경 A = 31,257㎡ → 31,745㎡ 증) 488㎡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면적 변경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영천대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영천시 금호읍 대미리 산2-19 일원	31,257	증) 488	31,745	면적 증가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영천대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A = 31,257㎡ → 31,745㎡ 증) 488㎡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붙임 : 도시개발법 시행령제15조제1항 7의2에 의한 토지의 세목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성명 (명칭)	주소
기정	계			36,885	31,257		
변경	계			31,745	31,745		
기정	대미리	산2-10	임	11,745	11,648	영천시	-
변경	〃	산2-19	임	11,993	11,993	영천시	-
기정	〃	산2-12	임	6,753	6,753	이무*	대구 수성구 황금동 240 *
						이정*	대구 달서구 월성동 500-4 *
						영천시	-
변경	〃	산2-12	임	6,753	6,753	영천시	-
기정	〃	산129	임	51	24	기획재정부	-
변경	〃	산129	임	51	51	기획재정부	-
변경	〃	산2-20	임	24	24	영천시	-
기정	〃	42	전	370	370	영천시	-
기정	〃	43-1	전	1,609	1,609	영천시	-
기정	〃	44-1	전	146	146	영천시	-
기정	〃	48	전	1,170	1,170	영천시	-
기정	〃	49-1	전	2,168	2,168	영천시	-
기정	〃	50-3	전	1,137	1,002	영천시	-
변경	〃	50-5	전	1,041	1,041	영천시	-
기정	〃	51-4	전	661	12	영천시	-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성명(명칭)	주소
변경	〃	51-6	전	49	49	영천시	-
기정	〃	51-5	유	639	12	영천시	-
변경	〃	51-7	유	16	16	영천시	-
기정	〃	55-1	전	4,743	4,552	영천시	-
변경	〃	55-6	전	4,587	4,587	영천시	-
기정	〃	55-3	도	180	63	영천시	-
변경	〃	55-8	도	70	70	영천시	-
기정	〃	55-4	전	362	362	영천시	-
기정	〃	56-1	전	1,025	815	영천시	-
변경	〃	56-3	전	823	823	영천시	-
기정	〃	57-2	유	429	92	영천시	-
변경	〃	57-3	유	95	95	영천시	-
기정	〃	66-2	구	195	87	영천시	-
변경	〃	66-5	구	89	89	영천시	-
기정	〃	1074	구	3,108	32	농림축산식품부	-
변경	〃	1074-1	구	7	7	기획재정부	-
변경	〃	1074-2	구	25	25	기획재정부	-
기정	〃	1075-1	임	394	340	기획재정부	-
변경	〃	1075-2	임	297	297	영천시	-

문경시 고시 제2019 - 17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영강 하천재해예방사업’ 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문 경 시 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영강 하천재해예방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방어 능력 증대를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재해예방 대책 수립을 통해 저지대의 침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함
- 개 요 : 하천정비(하상정비 L=8.4km, 호안시설 L=318m, 제방보강 L=2,309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문경시 영신동(영순교) ~ 문경시 영순면 말응리(낙동강 합류지점) 지내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문경시장

- 주 소 : 문경시 당교로 22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착 수 일 : 2016. 12. - 준공예정년월일 : 2019. 12.

6. 수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별지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시행청 비치(문경시청 안전재난과)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6년 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비고
사업비	23,069	4,934	2,500	7,000	6,667	1,968	

9. 공사예정공정표 : 시행청 비치(문경시청 안전재난과)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하천명 : 영강(지방하천)
- 위치 및 사업규모 : 상기와 같음
- ‘영강 하천기본계획(경상북도 고시 제2016-28호)’에 따라 하천시설물을 유지·관리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예상면적 : 없음

1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문경시 안전재난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안전재난과 (☎054-550-6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강 하천재해예방사업 편입용지 조서

○ 영강 하천재해예방사업

(금액단위: 원)

일련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영순면 율곡리	924-87	답	465	1.00	홍*식	경북 문경시 영순면 동무지길 70				
2	영순면 율곡리	924-88	답	486	1.00	홍*식	경북 문경시 영순면 동무지길 70				
3	영순면 율곡리	924-89	답	512	1.00	서*열	경북 문경시 영순면 밤실길 127				
4	영순면 율곡리	924-90	답	234	1.00	서*열	경북 문경시 영순면 밤실길 127				
5	영순면 율곡리	924-91	답	219	1.00	서*열	경북 문경시 영순면 밤실길 127				
6	영순면 율곡리	924-92	답	247	1.00	이*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28-27 302호				

일련번호	소재지	편입 지번	지목	편입 면적 (m^2)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7	영순면 율곡리	924-93	답	246	1.00	홍*식	경북 문경시 영순면 동무지길 70				
8	영순면 율곡리	924-94	답	241	1.00	홍*식	경북 문경시 영순면 동무지길 70				
9	영순면 율곡리	924-95	답	250	1.00	권*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98, 801동 307호(화정동, 별빛마을)				
10	영순면 율곡리	924-96	답	289	1.00	홍*식	경북 문경시 영순면 동무지길 20				
11	영순면 율곡리	924-97	답	315	1.00	홍*식	경북 문경시 영순면 동무지길 20				
12	영순면 율곡리	924-98	답	305	1.00	이*년	경북 상주시 함창읍 척동1길 54				

일련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3	영순면 율곡리	924-99	답	283	1.00	이*년	경북 상주시 함창읍 척동1길 54				
14	영순면 율곡리	924-100	답	271	1.00	홍*식	경북 문경시 영순면 동무지길 135-7				
15	영순면 율곡리	924-101	답	268	1.00	홍*일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710 금강아파트 102-506				
16	영순면 율곡리	924-102	답	236	1.00	홍*식	경북 문경시 영순면 동무지길 20				
17	영순면 율곡리	924-103	답	377	1.00	고*옥	경북 문경시 영순면 동무지길 7				
18	영순면 율곡리	924-104	답	182	1.00	김*옥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86-72				
19	영순면 율곡리	924-105	답	175	1.00	홍*식	경북 문경시 영순면 동무지길 20				

일련번호	소재지	편입 지번	지목	편입 면적 (m^2)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20	영순면 율곡리	924-106	답	81	1.00	강*순	경북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675				
21	영순면 율곡리	924-107	답	218	1.00	홍*식	경북 문경시 영순면 동무지길 20				
22	영순면 율곡리	924-108	답	237	1.00	홍*식	경북 문경시 영순면 동무지길 135-7				
23	영순면 율곡리	924-109	답	225	1.00	홍*식	경북 문경시 영순면 동무지길 135-7				
24	영순면 율곡리	924-110	답	223	1.00	홍*식	경북 문경시 영순면 동무지길 70				
25	영순면 율곡리	924-111	답	218	1.00	홍*식	경북 문경시 영순면 동무지길 70				
26	영순면 율곡리	924-112	답	239	1.00	황*곤	경북 문경시 영순면 영순로 253				

일련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27	영순면 율곡리	924-113	답	233	1.00	황*곤	경북 문경시 영순면 영순로 253				
28	영순면 율곡리	924-114	답	221	1.00	황*곤	경북 문경시 영순면 영순로 253				
29	영순면 율곡리	924-115	답	220	1.00	홍*식	경북 문경시 영순면 동무지길 20				
30	영순면 율곡리	924-116	답	214	1.00	홍*식	경북 문경시 영순면 동무지길 20				
31	영순면 율곡리	924-117	답	188	1.00	홍*식	경북 문경시 영순면 동무지길 20				
32	영순면 율곡리	924-118	답	168	1.00	서*보	경북 문경시 흥덕동 337-21 주은우방101-807				

일련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33	영순면 율곡리	924-119	답	148	1.00	서*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217번길 24, 105동 604호(권선동,두산동아아파트)				
34	영순면 율곡리	924-120	답	155	1.00	서*열	경북 문경시 영순면 밤실길 127				
35	영순면 율곡리	924-121	답	163	1.00	서*열	경북 문경시 영순면 밤실길 127				
36	영순면 율곡리	924-122	답	150	1.00	서*열	경북 문경시 영순면 밤실길 127				
37	영순면 율곡리	924-123	답	76	1.00	이*식	경북 문경시 영순면 밤실길 110-12				
38	영순면 율곡리	924-124	답	144	1.00	권*혁	경북 문경시 영순면 솔안마길 8-28				

일련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39	영순면 율곡리	924-125	답	146	1.00	권*혁	경북 문경시 영순면 솔안마길 8-28				
40	영순면 율곡리	924-126	답	146	1.00	서*열	경북 문경시 영순면 밤실길 127				
41	영순면 율곡리	924-127	답	146	1.00	서*열	경북 문경시 영순면 밤실길 127				
42	영순면 율곡리	924-128	답	137	1.00	서*열	경북 문경시 영순면 밤실길 127				
43	영순면 율곡리	924-129	답	61	1.00	홍*식	경북 문경시 영순면 동무지길 70				
44	영순면 율곡리	924-130	답	74	1.00	이*식	경북 문경시 영순면 밤실길 110-12				
45	영순면 의곡리	1043-1	임야	612	1.00	이*임	경북 문경시 영순면 도연안길 12-3				

일련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46	영순면 의곡리	1044-4	임야	21	1.00	홍*진	경북 문경시 영순면 도연안길 12-3				
47	영순면 의곡리	1046-30	답	392	1.00	홍*식	경북 문경시 돈달로 203,306호				
48	영순면 의곡리	1046-31	답	275	1.00	채*윤	대구광역시 동구 방천로 7길 12, 401호(지저동, 정효빌라)				
49	영순면 의곡리	1046-32	답	253	1.00	홍*식	경북 문경시 영순면 동무지길 135-7				
50	영순면 의곡리	1046-33	답	409	1.00	이*억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793, 101동 503호(시흥동,벽산아파트)				
51	영순면 의곡리	1046-34	답	431	1.00	홍*진	경북 문경시 영순면 청산재길 225				

일련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52	영순면 의곡리	1046-35	답	1,316	1.00	홍*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50, 1205동 307호(신청동,목동신시가지아파트)				
53	영순면 의곡리	1046-36	답	813	1.00	이*임	경북 문경시 영순면 도연안길 12-3				
54	영순면 의곡리	1046-37	답	866	1.00	홍*진	경북 문경시 영순면 도연안길 12-3				
55	영순면 의곡리	1046-38	답	2,080	1.00	홍*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50, 1205동 307호(신청동,목동신시가지아파트)				
56	영순면 의곡리	1046-39	답	443	1.00	홍*조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52-5 현대아파트 101-1006				

일련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57	영순면 의곡리	1046-40	답	709	1.00	홍*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92-39				

영강 하천재해예방사업 편입지장물 조서

○ 영강 하천재해예방사업

(금액단위: 원)

일련번호	소재지		편입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면적,㎡)	지분	지분율	소 유 자	비고
	읍면동	리동								
1	영순면	율곡리	924-91	우물	₡1,500m/m	1식		1.00	서*열	
2	영순면	율곡리	924-92	관정	농사용	1식		1.00	이*식	
3	영순면	율곡리	924-102	관정	농사용	1식		1.00	홍*식	
4	영순면	율곡리	924-120	배나무	20년생	24주		1.00	서*열	
5	영순면	율곡리	957-1 번지선	복숭아	20년생	3주		1.00	서*열	
6	영순면	율곡리	957-1 번지선	자두나무	20년생	1주		1.00	서*열	
7	영순면	율곡리	924-128	관정	타설식	1식		1.00	서*열	
8	영순면	의곡리	1046-34	사과나무	묘목,관수시설 포함	431㎡		1.00	홍*진	
9	영순면	의곡리	1046-34	우물	₡1,000m/m	1식		1.00	홍*진	

일련번호	소재지		편입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면적,㎡)	지분	지분율	소 유 자	비고
	읍면동	리동								
10	영순면	의곡리	1043-1, 1044-4외	사과나무	10년생,재배시설 포함	173주		1.00	홍*진	
11	영순면	의곡리	1043-1, 1044-4외	사과나무	18년생,재배시설 포함	125주		1.00	홍*진	
12	영순면	의곡리	1043-1, 1044-4외	자두나무	10년생	3주		1.00	홍*진	
13	영순면	의곡리	1043-1, 1044-4외	우물	Ø1,000m/m	1식		1.00	홍*진	
14	영순면	율곡리	924-118(1002-6)	농막		1식		1.00	서*보	
15	영순면	율곡리	924-118(1002-6)	두릅나무		100주		1.00	서*보	
16	영순면	율곡리	924-118(1002-6)	배나무		30주		1.00	서*보	
17	영순면	율곡리	924-118(1002-6)	복숭아나무		5주		1.00	서*보	
18	영순면	율곡리	924-96	관정	농사용	1식		1.00	홍*식	
19	영순면	율곡리	924-96	관정	152m/m*37m	1식		1.00	홍*식 (마을공동)	

일련번호	소재지		편입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면적,㎡)	지분	지분율	소유자	비고
	읍면동	리동								
20	영순면	율곡리	924-1	관정	15m/m*35m	1식		1.00	홍*식 (마을공동)	
21	영순면	율곡리	924-93	관정	농사용	1식		1.00	홍*식	
22	영순면	의곡리	1046-40	관정	농사용	1식		1.00	홍*진	

경산시 고시 제2019-19호

경산 도시관리계획(중산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중산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산시 중산동 일원의 경산 도시관리계획(중산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중산1지구·중산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舊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경산시 중산동 일원의 중산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하여 종전 「도시계획법」 제2조제1호 다목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 변경 및 중산1지구·중산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경산 도시관리계획(중산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총괄 (변경있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04,597.3	증)973.0	805,570.3	100.0	
주거지역	소 계	362,767.3	증)973.0	363,740.3	45.2	
	제2종일반주거지역	70,914.0	-	70,914.0	8.8	
	제3종일반주거지역	4,752.0	-	4,752.0	0.6	
	준주거지역	287,101.3	증)973.0	288,074.3	35.8	· 중로1-22호선 우선 개설구간의 중산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추가 편입**(연접된 중산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사항으로 용도지역 편입면적 변경(**실제 용도지역변경은 없음)**
상업지역	소 계	265,509.0	-	265,509.0	33.0	
	일반상업지역	265,509.0	-	265,509.0	33.0	
녹지지역	소 계	176,321.0	-	176,321.0	21.9	
	자연녹지지역	176,321.0	-	176,321.0	21.9	

※ 중로1-22호선 우선 개설구간의 중산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추가 편입 **(연접된 중산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사항으로 용도지역 편입면적 변경 **(실제 용도지역간의 변경은 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미관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5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광로3-1 호선	2,400	160	15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지구 내

다. 시가지조성사업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지구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중산 제1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경상북도 경산시 중산동 1번지 일원	804,597.3	증)973.0	805,570.3	중로1-22호선 우선 개설 구간의 중산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지구 추가 편입에 따른 시가지조성사업지구 변경

라. 시가지조성사업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1)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가) 도로 (변경있음)

■ 도로총괄표(기정)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26	7,280	141,469.4	13	4,427	97,030.6	5	1,887	37,996.8	8	972	6,442.0
일반도로	계	14	6,386	136,005.4	8	4,402	96,780.6	5	1,887	37,996.8	1	103	1,228.0
	대로	6	3,252	82,200.4	2	1,426	45,396.6	4	1,826	36,803.8	–	–	–
	중로	8	3,134	53,805.0	6	2,970	51,384.0	1	61	1,193.0	1	103	1,228.0
보행자전용도로	계	12	894	5,464.0	5	25	250.0	–	–	–	7	869	5,214.0
	소로	12	894	5,464.0	5	25	250.0	–	–	–	7	869	5,214.0

■ 도로총괄표(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26	7,280	142,442.4	13	4,427	98,003.6	5	1,887	37,996.8	8	972	6,442.0
일반도로	계	14	6,386	136,978.4	8	4,402	97,753.6	5	1,887	37,996.8	1	103	1,228.0
	대로	6	3,252	82,200.4	2	1,426	45,396.6	4	1,826	36,803.8	–	–	–
	중로	8	3,134	54,778.0	6	2,970	52,357.0	1	61	1,193.0	1	103	1,228.0
보행자전용도로	계	12	894	5,464.0	5	25	250.0	–	–	–	7	869	5,214.0
	소로	12	894	5,464.0	5	25	250.0	–	–	–	7	869	5,214.0

※ 중로1-22호선 우선 개설구간의 중산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추가 편입에 따른 도로 편입면적 변경으로서, **실제 도로(중로1-22호선)의 선형, 연장, 폭원, 면적에 대한 변경 없음**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2	35	주간선	17,395	중산구 역계	대로2-6 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지구내 205m -가감속 차로 -버스베이
기정	대로	1	6	36~36.8	보조간선	1,221	광로3-1호선	대로1-2 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가감속차로 510㎡ 포함
기정	대로	2	5	30~50 (15~30)	주간선	1,551	광로3-1호선	대로2-6 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지구내 667m -가감속차로 650㎡ 포함
기정	대로	2	6	30 (15)	주간선	830	대로1-2호선	대로2-5 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지구내 폭원 15m, 연장 675m 포함 -가감속차로 650㎡ 포함
기정	대로	2	13	30	집산	242	대로2-5호선	대로1-6 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대로	2	14	30	집산	242	대로2-6호선	대로1-6 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6	20	집산	164	중로1-18호선	대구시 구역계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중로	1	18	20	집산	1,430	대로2-5호선	대로1-6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중로	1	22	20 (5~10)	국지	564	대로2-5호선	중로1-18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4-275호 (2004.10.15)	- 지구내 폭원 5~10m, 연장 564m 포함
기정	중로	1	23	20	집산	79	중로1-18호선	중로2-42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중로	1	24	20	집산	300	대로1-6호선	대로2-14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중로	1	25	20	집산	433	대로2-14호선	대로2-13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중로	2	42	15~18	집산	61	중로1-23호선	중산동 623번지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31	12	국지	103	중로1-18호선	대구시 구역계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소로	1	66	10	특수	5	대로1-2호선	C1획지경계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1	67	10	특수	5	대로2-6호선	C1획지경계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1	68	10	특수	5	대로2-6호선	C2-1획지경계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1	69	10	특수	5	대로2-5호선	C3획지경계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1	70	10	특수	5	대로2-5호선	C3획지경계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3	4	6	특수	320	중로1-25호선	대로2-6호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5	6	특수	326	중로1-25호선	대로2-5호선	보행자전용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소로	3	355	6	특수	5	대로2-6호선	C1획지경계선	보행자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3	356	6	특수	37	중로1-24호선	대로1-6호선	보행자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3	357	6	특수	5	대로2-5호선	C3획지경계선	보행자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3	358	6	특수	37	중로1-25호선	대로1-6호선	보행자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3	397	6	특수	139	중로1-18호선	중산3근린공원	보행자전용		경산시고시 제2014-72호 (2014.7.24)	

※ ( )의 폭원은 중산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폭원임

나)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6,056.0	-	6,056.0		
기정	19	노외 주차장	경산시 중산동 639	3,554.4	-	3,554.4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20	노외 주차장	경산시 중산동 633	2,501.6	-	2,501.6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다) 공원 (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52,179.0	-	152,179.0		
기정	20	중산 공원	근린 공원	경산시 중산동 674유 일원	111,497.0	-	111,497.0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21	중산2 공원	근린 공원	경산시 중산동 653	13,588.6	-	13,588.6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27	중산3 공원	근린 공원	경산시 중산동 1장 일원	22,189.0		22,189.0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94	중산제1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경산시 중산동 642	1,886.7	-	1,886.7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95	중산제2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경산시 중산동 667	1,719.1	-	1,719.1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27	중산소 공원	소공원	경산시 중산동 659	1,298.6	-	1,298.6	경산시고시 제2014-72호 (2014.7.24)	

라) 녹지 (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64	녹지	완충녹지	대로2-5호선, 대로2-6호선 변	5,264	-	5,264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폭5m

마) 광장 (변경없음)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18	광장	일반광장	경산시 중산동 636	1,852.4	-	1,852.4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바) 공공공지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0	공공공지	경산시 중산동 624-1	92.0	-	92.0	경산시고시 제2011-62호 (2011.10.13)	

사) 학교 (변경없음)

■ 학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51,476.7	-	51,476.7	-	
기정	20	학교	초등학교	경산시 중산동 660	15,539.7	-	15,539.7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9	학교	중학교	경산시 중산동 1장 일원	17,496.0	-	17,496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11	학교	고등학교	경산시 중산동 1장 일원	18,441.0	-	18,441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아) 공공청사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	공공청사	동사무소, 보건소, 파출소, 우체국, 소방파출소	경산시 중산동 630	3,985.0	-	3,985.0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자) 유수지 (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8	유수지	저류시설	경산시 중산동 631	6,469.5	-	6,469.5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3. 경산 도시관리계획(중산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지구단위계획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중산1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경상북도 경산시 중산동 1번지 일원	804,597.3	증)973.0	805,570.3	중로1-22호선 우선 개설구간의 중산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추가 편입(기정 중산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① 용도지역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05,570.3	100.0	
주거지역	소 계	363,740.3	45.2	
	제2종일반주거지역	70,914.0	8.8	
	제3종일반주거지역	4,752.0	0.6	
	준주거지역	288,074.3	35.8	
상업지역	소 계	265,509.0	33.0	
	일반상업지역	265,509.0	33.0	
녹지지역	소 계	176,321.0	21.9	
	자연녹지지역	176,321.0	21.9	

② 용도지구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5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광로3-1호선	2,400	160	15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지구내

③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변경있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804,597.3	증)973.0	805,570.3	100.00	
주거용지		16,983.0	증)1,487.0	18,470.0	2.29	교하노씨문중 민원 반영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축소 → 주거용지 확대
준 주 거 용 지		210,982.8	-	210,982.8	26.19	
상업·업무시설용지		189,185.5	-	189,185.5	23.48	
공공시설용지	소 계	368,844.0	증)973.0	369,817.0	45.91	
	공공청사	3,985.0	-	3,985.0	0.49	
	학 교	51,476.7	-	51,476.7	6.39	
	공 원	152,179.0	-	152,179.0	18.89	
	녹 지	5,264.0	-	5,264.0	0.65	
	광 장	1,852.4	-	1,852.4	0.23	
	공공공지	92.0	-	92.0	0.01	
	유수지	6,469.5	-	6,469.5	0.80	
	주 차 장	6,056.0	-	6,056.0	0.75	
	도 로	141,469.4	증)937.0	142,406.4	17.68	중로1-22호선 우선개설구간 사업대상지 추가편입
기타시설용지	소 계	18,602.0	감)1,487.0	17,115.0	2.12	
	문화및집회시설	7,909.0	감)1,487.0	6,422.0	0.80	교하노씨문중 민원 반영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축소
	사회복지시설	10,693.0	-	10,693.0	1.33	

※ 교하노씨문중 민원사항 반영 및 중로1-22호선 우선개설구간의 사업대상지 편입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① 도로 (변경있음)

■ 도로총괄표(기정)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장 (m)	면 적 (㎡)
합계		26	7,280	141,469.4	13	4,427	97,030.6	5	1,887	37,996.8	8	972	6,442.0
일반도로	계	14	6,386	136,005.4	8	4,402	96,780.6	5	1,887	37,996.8	1	103	1,228.0
	대로	6	3,252	82,200.4	2	1,426	45,396.6	4	1,826	36,803.8	–	–	–
	중로	8	3,134	53,805.0	6	2,970	51,384.0	1	61	1,193.0	1	103	1,228.0
보행자 전용도로	계	12	894	5,464.0	5	25	250.0	–	–	–	7	869	5,214.0
	소로	12	894	5,464.0	5	25	250.0	–	–	–	7	869	5,214.0

■ 도로총괄표(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장 (m)	면 적 (㎡)
합계		26	7,280	142,442.4	13	4,427	98,003.6	5	1,887	37,996.8	8	972	6,442.0
일반도로	계	14	6,386	136,978.4	8	4,402	97,753.6	5	1,887	37,996.8	1	103	1,228.0
	대로	6	3,252	82,200.4	2	1,426	45,396.6	4	1,826	36,803.8	–	–	–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장 (m)	면 적 (㎡)
	중로	8	3,134	54,778.0	6	2,970	52,357.0	1	61	1,193.0	1	103	1,228.0
보행자 전용도로	계	12	894	5,464.0	5	25	250.0	-	-	-	7	869	5,214.0
	소로	12	894	5,464.0	5	25	250.0	-	-	-	7	869	5,214.0

※ 중로1-22호선 우선 개설구간의 중산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추가 편입에 따른 도로 편입면적 변경으로서, 실제 도로(중로1-22호선)의 선형, 연장, 폭원, 면적에 대한 변경 없음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2	35	주간선	17,395	중산구 역계	대로2-6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지구내 205m -가감속 차로 -버스베이
기정	대로	1	6	36~36.8	보조간선	1,221	광로3-1호선	대로1-2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가감속차로 510㎡ 포함
기정	대로	2	5	30~50 (15~30)	주간선	1,551	광로3-1호선	대로2-6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지구내 667m -가감속차로 650㎡ 포함
기정	대로	2	6	30 (15)	주간선	830	대로1-2호선	대로2-5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지구내 폭원 15m, 연장 675m 포함 -가감속차로 650㎡ 포함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13	30	집산	242	대로2-5호선	대로1-6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대로	2	14	30	집산	242	대로2-6호선	대로1-6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중로	1	16	20	집산	164	중로1-18호선	대구시 구역계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중로	1	18	20	집산	1,430	대로2-5호선	대로1-6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중로	1	22	20 (5~10)	국지	564	대로2-5호선	중로1-18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4-275호 (2004.10.15)	-지구내 폭원 5~10m, 연장 564m 포함
기정	중로	1	23	20	집산	79	중로1-18호선	중로2-42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중로	1	24	20	집산	300	대로1-6호선	대로2-14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중로	1	25	20	집산	433	대로2-14호선	대로2-13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중로	2	42	15~18	집산	61	중로1-23호선	중산동 623번지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31	12	국지	103	중로1-18호선	대구시 구역계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소로	1	66	10	특수	5	대로1-2호선	C1획지 경계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1	67	10	특수	5	대로2-6호선	C1획지 경계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1	68	10	특수	5	대로2-6호선	C2-1획지 경계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1	69	10	특수	5	대로2-5호선	C3획지 경계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1	70	10	특수	5	대로2-5호선	C3획지 경계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3	4	6	특수	320	중로1-25호선	대로2-6호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소로	3	5	6	특수	326	중로1-25호선	대로2-5호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소로	3	355	6	특수	5	대로2-6호선	C1획지 경계선	보행자 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356	6	특수	37	중로1-24호선	대로1-6호선	보행자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3	357	6	특수	5	대로2-5호선	C3획지 경계선	보행자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3	358	6	특수	37	중로1-25호선	대로1-6호선	보행자전용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소로	3	397	6	특수	139	중로1-18호선	중산3근린공원	보행자전용		경산시고시 제2014-72호 (2014.7.24)	

※ ( )의 폭원은 중산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편입되는 폭원임

②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계			-	6,056.0	-	6,056.0		
기정	19	노외주차장	경산시 중산동 639	3,554.4	-	3,554.4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20	노외주차장	경산시 중산동 633	2,501.6	-	2,501.6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③ 공원 (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152,179.0	-	152,179.0		
기정	20	중산 공원	근린 공원	경산시 중산동 674유 일원	111,497.0	-	111,497.0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21	중산2 공원	근린 공원	경산시 중산동 653	13,588.6	-	13,588.6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27	중산3 공원	근린 공원	경산시 중산동 1장 일원	22,189.0		22,189.0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94	중산제1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경산시 중산동 642	1,886.7	-	1,886.7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95	중산제2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경산시 중산동 667	1,719.1	-	1,719.1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27	중산 소공원	소공원	경산시 중산동 659	1,298.6	-	1,298.6	경산시고시 제2014-72호 (2014.7.24)	

④ 녹지 (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4	녹지	완충 녹지	대로2-5호선, 대로2-6호선 변	5,264	-	5,264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폭5m

⑤ 광장 (변경없음)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8	광장	일반 광장	경산시 중산동 636	1,852.4	-	1,852.4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⑥ 공공공지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0	공공 공지	경산시 중산동 624-1	92.0	-	92.0	경산시고시 제2011-62호 (2011.10.13)	

⑦ 학교 (변경없음)

■ 학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51,476.7		51,476.7		
기정	20	학교	초등학교	경산시 중산동 660	15,539.7	-	15,539.7	경북도고시 제2000-10호 (2000.1.13)	
기정	9	학교	중학교	경산시 중산동 1장 일원	17,496.0	-	17,496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기정	11	학교	고등학교	경산시 중산동 1장 일원	18,441.0	-	18,441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⑧ 공공청사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	공공청사	동사무소, 보건소, 파출소, 우체국, 소방파출소	경산시 중산동 630	3,985.0	-	3,985.0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⑨ 유수지 (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8	유수지	저류시설	경산시 중산동 631	6,469.5	-	6,469.5	경북도고시 제2008-97호 (2008.2.25)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① 가구 및 획지의 규모의 조성 (변경있음)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총계	-	804,633.3		804,597.3	
A1	A1	67,313	1	33,192	
			2	26,650	획지분할 최소면적 10,000㎡ 이상
			3	7,471	
A2	A2	116,208	1	106,314	획지분할 최소면적 13,000㎡ 이상
			2	9,894	획지분할 최소면적 3,000㎡ 이상
A3	A3	16,974	1	16,974	획지분할 최소면적 3,000㎡ 이상
A4	A4	2,787.7	1	2,787.7	획지분할 최소면적 800㎡ 이상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A5	A5	6,480.2	1	2,925.8	획지분할 최소면적 800㎡ 이상
			2	3,554.4	노외주차장
A6	A6	7,254.7	1	4,575.6	획지분할 최소면적 800㎡ 이상
			2	2,679.1	획지분할 최소면적 800㎡ 이상
A7	A7	4,873.9	1	2,372.3	획지분할 최소면적 800㎡ 이상
			2	2,501.6	노외주차장
B1	B1	60,829.0	1	16,983.0	획지분할 최소면적 8,000㎡ 이상
			2	7,909.0	문화 및 집회시설
			3	18,441.0	고등학교
			4	17,496.0	중학교
B2	B2	10,693.0	1	10,693.0	사회복지시설
C1	C1	55,762.0	1	55,762.0	획지분할 최소면적 25,000㎡ 이상
C2	C2	48,767.9	1	33,228.2	
			2	15,539.7	초등학교
C3	C3	68,825.3	1	68,825.3	획지분할 최소면적 30,000㎡ 이상
C4	C4	23,368.0	1	19,383.0	
			2	3,985.0	획지분할 최소면적 1,200㎡ 이상
C5	C5	7,134.3	1	7,134.3	
기 타		307,362.3		307,326.3	도로, 녹지, 공원, 광장, 공공공지, 유수지 등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총계	-	805,570.3		805,570.3	
A1	A1	67,313	1	33,192	
			2	26,650	획지분할 최소면적 10,000㎡ 이상
			3	7,471	
A2	A2	116,208	1	106,314	획지분할 최소면적 13,000㎡ 이상
			2	9,894	획지분할 최소면적 3,000㎡ 이상
A3	A3	16,974	1	16,974	획지분할 최소면적 3,000㎡ 이상
A4	A4	2,787.7	1	2,787.7	획지분할 최소면적 800㎡ 이상
A5	A5	6,480.2	1	2,925.8	획지분할 최소면적 800㎡ 이상
			2	3,554.4	노외주차장
A6	A6	7,254.7	1	4,575.6	획지분할 최소면적 800㎡ 이상
			2	2,679.1	획지분할 최소면적 800㎡ 이상
A7	A7	4,873.9	1	2,372.3	획지분할 최소면적 800㎡ 이상
			2	2,501.6	노외주차장
B1	B1	60,829.0	1	18,470.0	획지분할 최소면적 8,000㎡ 이상
			2	6,422.0	문화 및 집회시설
			3	18,441.0	고등학교
			4	17,496.0	중학교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B2	B2	10,693.0	1	10,693.0	사회복지시설
C1	C1	55,762.0	1	55,762.0	획지분할 최소면적 25,000㎡ 이상
C2	C2	48,767.9	1	33,228.2	
			2	15,539.7	초등학교
C3	C3	68,825.3	1	68,825.3	획지분할 최소면적 30,000㎡ 이상
C4	C4	23,368.0	1	19,383.0	
			2	3,985.0	획지분할 최소면적 1,200㎡ 이상
C5	C5	7,134.3	1	7,134.3	
기 타		308,299.3		308,299.3	도로, 녹지, 공원, 광장, 공공공지, 유수지 등

※ 교하노씨문중 민원 반영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B1-2) 축소(감1,487㎡), 주거용지(B1-1) 확대(증1,487㎡) 및 중로1-22호선 우선개설구간 사업대상지 추가편입(증973㎡)에 따른 가구 및 획지계획 일부 변경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① 주거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B1-1	B1-1	용도	• 허용용도 – 단독형 집합주택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자 전용의 비영리 공동이용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5층	
		배치	• 건축물 배치는 경사지형을 고려한 자연지형 순응형 건축배치를 하여 지형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권장	
		형태	• 건축물 1동의 길이는 기준층의 호수를 기준으로 하여 6호연립 이하로 건축 • 건축물을 'ㄱ'자형 또는 곡선형으로 배치하거나 층고 차이가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8호연립까지 허용 • 지붕형태는 구배가 3/10~7/10이하의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함	
		색채(권장)	• 외벽의 색상은 순색(Chromaticness=100)에 가까운 색, 흰색(Whiteness=0)에 가까운 색, 검정(Blackness=100)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인접하는 색과의 색차를 줄이도록 권장 • 원경에서의 통일감과 근경에서의 변화감을 도모하는 색채계획을 위하여 기조색을 통일하고 강조색을 사용토록 권장 • 권역별 차별성을 위한 강조색은 작은 면적과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등에 사용토록 권장 • 발코니와 난간의 색채는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권장.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 시각적 초점이 될 수 있는 주택의 측벽에 경산시의 정체성과 단지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처리를 권장	
		건축선	• 20m도로변에 4m 건축한계선 지정 • 획지 경계 및 12m 도로변에서 3m 건축한계선 지정	

②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A1-2 C1 C2-1 C3 C4-1 C5	A1-2 C1 C2-1 C3 C4-1 C5	용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불허용도외의 용도 • 불허용도 –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는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용도를 불허한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단 C1, C2-1, C3획지에 공동주택건설 시 280%이하)	

도면 번호	위치 (가구 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높이	• 최고층수 - 35층	
		배치	• 남향위주 배치하며, 개방감 확보를 위한 탑상형 권장 • 지형·지세, 지구내 발생단차 등을 고려하여 변화감 있는 층고계획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이 형성토록 권장 •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토록 건축배치 권장	
		형태	• 판상형 건축물 1동의 길이는 15층 이하의 경우 80m 이하, 16층 이상의 경우 4호 연립 또는 60m 이하로 제한 • 지붕은 경사지붕(구배가 10분의 3 이상, 10분의 7 이하) 또는 장식구조물로 특화한 평지붕을 하도록 하며, 지붕장식물 업라이팅 등 야간경관조명을 권장 • 필로티 설치(권장)	
		색채 (권장)	• 외벽의 색상은 순색(Chromaticness=100)에 가까운 색, 흰색(Whiteness=0)에 가까운 색, 검정(Blackness=100)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인접하는 색과의 색차를 줄이도록 권장 • 원경에서의 통일감과 근경에서의 변화감을 도모하는 색채계획을 위하여 기조색을 통일하고 강조색을 사용토록 권장 • 권역별 차별성을 위한 강조색은 작은 면적과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등에 사용토록 권장 • 건축물의 입면은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를 권장	
		건축선	• 완충녹지 및 유수지경계에서 5m 건축한계선 지정 (C1, C2-1, C3, C4-1)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 도로(폭원 40m)변에 15m 건축한계선 지정 (A1-2) • 도로(폭원 20m)변에 4~7m 건축한계선 지정 (C2-1, C3) • 도로(폭원 36.8m)변에 4m 건축한계선 지정 (A1-2, C1, C4-1, C5) • 도로(폭원 30m)변에 4m 건축한계선 지정 (C1, C2-1, C3, C4-1) • 도로(폭원 20m)변에 4m 건축한계선 지정 (C1, C4-1, C5) • 도로(폭원 20m)변에 2m 건축한계선 지정 (A1-2) • 도로(폭원 12m)변에 3m 건축한계선 지정 (C5) • 보행자전용도로변에 3m 건축한계선 지정 (C2-1, C3) • 획지경계부에 3m 건축한계선 지정 (C2-1, C4-1) • 사업대상지 경계부에서 3m 건축한계선 지정 (A1-2, C5)	

③ 상업 · 업무용지 (변경없음)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치(가구번호)</th><th>구분</th><th>계 획 내 용</th><th>비고</th></tr>
<tr><td>A1-1
A4
A5-1
A6-1
A6-2
A7-1</td><td>A1-1
A4
A5-1
A6-1
A6-2
A7-1</td><td>용도</td><td>•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불허용도외의 용도
• 불허용도
<table>
<tr><th>구분</th><th>불허용도</th></tr>
<tr><td>A1-1</td><td>- 단독주택, 공동주택(주상복합)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td></tr>
</table>
</td><td></td></tr>
</table>

<table>
<tr><th>도면
번호</th><th>위치
(가구
번호)</th><th>구분</th><th>계 획 내 용</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
<table>
<tr><th>구분</th><th>불허용도</th></tr>
<tr><td>A4,
A5-1,
A6-1,
A6-2,
A7-1</td><td>- 단독주택, 공동주택(주상복합)
- 위락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td></tr>
</table>
※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는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용도를 불허한다
</td><td></td></tr>
<tr><td>건폐율</td><td>• 50% 이하 : A1-1
• 60% 이하 : A4, A5-1, A6-1, A6-2, A7-1</td><td></td></tr>
<tr><td>용적률

높이</td><td>
<table>
<tr><th>구 분</th><th>용 적 률</th><th>최 고 층 수</th></tr>
<tr><td>A1-1</td><td>800%이하</td><td>30층</td></tr>
<tr><td>A4, A5-1,
A6-1, A6-2, A7-1</td><td>500%이하</td><td>10층</td></tr>
</table>
</td><td></td></tr>
<tr><td>배치</td><td>-</td><td></td></tr>
<tr><td>형태</td><td>•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이나 투시형셔터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A4, A5-1, A6-1, A6-2, A7-1)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이나 장식물 처리로 옥상구조물을 차</td><td></td></tr>
</table>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폐하여야 함.(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아름다운 야간경관 연출을 위하여 지붕장식물 업라이팅 등 야간경관조명을 권장.	
		색채(권장)	• 기조색은 원색과 가까운색(채도가 높은색)은 금지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선택을 사용하도록 권장 • 원경에서의 통일감과 근경에서의 변화감을 도모하는 색채계획을 위하여 기조색을 통일하고 강조색을 사용토록 권장 • 보조색은 기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하고, 기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권장 • 입면은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를 권장	
		건축선	• 북측 광로3-1호선변 건축한계선 15m 지정 (A1-1) • 동측 대로2-5호선변 건축한계선 4~10m 지정 (A1-1) • 도로(폭원 36.8m)변에 2m 건축한계선 지정 (A4, A5-1, A6-1, A6-2, A7-1) • 도로(폭원 30m)변에 4m 건축한계선 지정 (A5-1, A6-1, A7-1) • 도로(폭원 20m)변에 2m 건축한계선 지정 (A1-1, A4, A5-1, A6-1, A6-2, A7-1) • 광장변에 3m 건축한계선 지정 (A6-1, A6-2) • 보행자전용도로변에 3m 건축한계선 지정 (A4, A6-2) • 도로모퉁이변에 4m 건축한계선 지정 (A4) • 주차장획지선에서 3m 건축한계선 지정 (A5-1, A7-1)	
A2-1	A2-1	용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불허용도외의 용도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 불허용도 –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는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용도를 불허한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65층	
		배치	• 단조롭고 획일적인 형태는 지양하며, 다양한 공간구성 및 Land Mark적인 형태로 계획 • 주변지역에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탑상형 건축물 권장 • 주상복합을 건축할 경우 업무·판매유도죤이 지정된 곳에서는 주상복합시설 중 상업시설 연면적의 70%이상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잔여부분은 연도형 가로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간선가로변에 가급적 배치토록 하여 상업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중심부 랜드마크타워는 상징성을 고려하여 2동 이하로 한다.	
		형태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이나 장식물 처리로 옥상구조물을 차폐하여야 함.(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도면 번호	위치 (가구 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아름다운 야간경관 연출을 위하여 지붕장식물 업라이팅 등 야간 경관조명을 권장.	
		색채 (권장)	• 기조색은 원색과 가까운색(채도가 높은색)은 금지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선택을 사용하도록 권장 • 원경에서의 통일감과 근경에서의 변화감을 도모하는 색채계획을 위하여 기조색을 통일하고 강조색을 사용토록 권장 • 보조색은 기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하고, 기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권장 • 입면은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를 권장	
		건축선	• 도로(폭원 36.8m, 20m)변에 4m 건축한계선 지정 • A2-2블록의 획지분할선에서 3m 건축한계선 지정 • 중산공원 경계부에서 15m 건축한계선 지정 • 획지 중심부 20m 공공보행통로변에 4m를 이격하여, 벽면한계선(높이 10m 이상) 지정	
A2-2	A2-2	용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방송국 및 방송관련시설과 불허용도외의 용도 • 불허용도 –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는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용도를 불허한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35층	
		배치	• 단조롭고 획일적인 형태는 지양하며, 다양한 공간구성 및 Land Mark적인 형태로 계획	
		형태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이나 장식물 처리로 옥상구조물을 차폐하여야 함.(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아름다운 야간경관 연출을 위하여 지붕장식물 업라이팅 등 야간경관조명을 권장.	
		색채(권장)	• 기조색은 원색과 가까운색(채도가 높은색)은 금지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선택을 사용하도록 권장 • 원경에서의 통일감과 근경에서의 변화감을 도모하는 색채계획을 위하여 기조색을 통일하고 강조색을 사용토록 권장 • 보조색은 기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하고, 기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권장 • 입면은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를 권장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선	• 20m 도로변에 4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 A2-1블록의 획지분할선에서 3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 중산공원 경계부에서 15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A3	A3	용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불허용도외의 용도 • 불허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주상복합)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는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용도를 불허한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35층	
		배치	• 단조롭고 획일적인 형태는 지양하며, 다양한 공간구성 및 Land Mark적인 형태로 계획	
		형태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이나 장식물 처리로 옥상구조물을 차폐하여야 함.(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아름다운 야간경관 연출을 위하여 지붕장식물 업라이팅 등 야간경관조명을 권장.	
		색채(권장)	• 기조색은 원색과 가까운색(채도가 높은색)은 금지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선택을 사용하도록 권장 • 원경에서의 통일감과 근경에서의 변화감을 도모하는 색채계획을 위하여 기조색을 통일하고 강조색을 사용토록 권장 • 보조색은 기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하고, 기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권장 • 입면은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를 권장	
		건축선	• 도로(폭원 36.8m, 20m)변에 4m 건축한계선 지정 • 공원변에 3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A3) • 도로(대1-2호선) 경계부에서 2~5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A3)	
A1-3	A1-3	용도	•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단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및 종류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및 경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는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용도를 불허한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800% 이하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높이	• 최고층수 – 30층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20m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 2m 지정	

④ 공공시설용지(공공청사, 학교, 주차장) (변경없음)

■ 공공청사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C4-2	C4-2	용도	•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동사무소, 우체국,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보건소 등)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10층	
		배치	–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형태	•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 • 개방감을 주기 위한 투시형 셔터를 1층 벽면의 1/2이상에 설치토록 권장 • 지붕형태는 구배가 10분의 3 이상, 10분의 7 이하의 경사지붕을 하도록 권장	
		색채(권장)	• 외벽의 색상은 순색(Chromaticness=100)에 가까운 색, 흰색(Whiteness=0)에 가까운 색, 검정(Blackness=100)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인접하는 색과의 색차를 줄이도록 권장 • 강한 그래픽, 현란한 색채 등의 사용은 금지 • 지붕의 색채는 기조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을 사용토록 권장 • 담장색채는 건축물의 외장색과 색차가 거의 없으면서 돌출되지 않는 색을 사용토록 권장	
		건축선	• 도로(폭원 36.8m, 30m)변에 4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 획지경계선부에 3m 건축한계선을 지정	

■ 학교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도	• 허용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최고층수 - 5층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B1-3 B1-4 C2-2	B1-3 B1-4 C2-2	배치	-	
		형태	-	
		색채(권장)	• 외벽의 색상은 순색(Chromaticness=100)에 가까운 색, 흰색(Whiteness=0)에 가까운 색, 검정(Blackness=100)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인접하는 색과의 색차를 줄이도록 권장 • 강한 그래픽, 현란한 색채 등의 사용은 금지 • 지붕의 색채는 기조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을 사용토록 권장 • 담장색채는 건축물의 외장색과 색차가 거의 없으면서 돌출되지 않는 색을 사용토록 권장	
		건축선	• 획지 경계부에 3m 건축한계선 지정 (B1-3, B1-4, C2-2) • 중1-18호선(폭원 20m)변 7m의 건축한계선 지정 (B1-3, B1-4) • 중1-16호선(폭원 20m)변 5m의 건축한계선 지정 (B1-4) • 대2-14호선(폭원 30m)변에 4m 건축한계선 지정 (C2-2) • 완충녹지변에 5m 건축한계선 지정 (C2-2)	

■ 주차장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A5-2 A7-2	A5-2 A7-2	용도	•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단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및 종류에 대하여는 주차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장법 및 경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는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용도를 불허한다.	
		건폐율	• 경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름	
		용적률	• 경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름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권장)	• 외벽의 색상은 순색(Chromaticness=100)에 가까운 색, 흰색(Whiteness=0)에 가까운 색, 검정(Blackness=100)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인접하는 색과의 색차를 줄이도록 권장 • 강한 그래픽, 현란한 색채 등의 사용은 금지 • 지붕의 색채는 기조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을 사용토록 권장 • 담장색채는 건축물의 외장색과 색차가 거의 없으면서 돌출되지 않는 색을 사용토록 권장	
		건축선	• 36.8m 도로변에 2m 건축한계선 지정 (A5-2, A7-2) • 20m도로변에 2m 건축한계선 지정 (A5-2, A7-2) • 보행자도로변에 3m 건축한계선 지정 (A5-2, A7-2) • 획지 경계변에 3m 건축한계선 지정 (A5-2, A7-2)	

⑤ 기타시설용지(사회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B2	B2	용도	• 허용용도 – 의료시설 중 병원 – 노유자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15층	
		배치	–	
		형태	–	
		색채(권장)	• 외벽의 색상은 순색(Chromaticness=100)에 가까운 색, 흰색(Whiteness=0)에 가까운 색, 검정(Blackness=100)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인접하는 색과의 색차를 줄이도록 권장 • 강한 그래픽, 현란한 색채 등의 사용은 금지 • 지붕의 색채는 기조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을 사용토록 권장 • 담장색채는 건축물의 외장색과 색차가 거의 없으면서 돌출되지 않는 색을 사용토록 권장	
		건축선	• 근린공원(건천지) 경계부에 3m 건축한계선 지정 • 사업대상지 경계부에서 3m 건축한계선 지정 • 20m도로변에 4m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 1-2호선(30m)변에 5m 건축한계선 지정	

■ 문화및집회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B1-2	B1-2	용도	• 허용용도 –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5층	
		배치	–	
		형태	•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 • 지붕형태는 구배가 10분의 3 이상, 10분의 7 이하의 경사지붕을 하도록 권장	
		색채(권장)	• 외벽의 색상은 순색(Chromaticness=100)에 가까운 색, 흰색(Whiteness=0)에 가까운 색, 검정(Blackness=100)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인접하는 색과의 색차를 줄이도록 권장 • 강한 그래픽, 현란한 색채 등의 사용은 금지 • 지붕의 색채는 기조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을 사용토록 권장 • 담장색채는 건축물의 외장색과 색차가 거의 없으면서 돌출되지 않는 색을 사용토록 권장	
		건축선	• 20m도로변에 4m 건축한계선 지정 • 12m 도로변에서 3m 건축한계선 지정 • 획지 경계변에 3m 건축한계선 지정	

마) 교통처리계획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①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 주거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B1-1	B1-1	차량 출입구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 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교통영향평가와 상이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우선으로 한다.	
		주차장	•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및 경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영향평가 상에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라야 한다. • 지하주차장 설치 비율은 경산시 주차장조례를 따른다. 다만 교통영향평가 상에 지하주차장 설치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라야 한다.	

■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A1-2 C1 C2-1 C3 C4-1 C5	A1-2 C1 C2-1 C3 C4-1 C5	차량 출입구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 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교통영향평가와 상이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우선으로 한다.	
		단지내 도로	• 두개의 단지가 서로 마주보고 차량출입구가 설치될 경우에는 가급적 출입구의 위치를 일치시키도록 한다. • 당해 주택단지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 자 또는 '+'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한다 •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주차장	•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및 경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영향평가 상에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라야 한다. • 지하주차장 설치 비율은 경산시 주차장조례를 따른다. 다만 교통영향평가 상에 지하주차장 설치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라야 한다.	
		공공보행통로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블록내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블록은 시행지침에 의거 보행자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 블록내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않은 블록은 자유롭게 보행자통로를 조성하되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 유치원시설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치되도록 함	

■ 상업 · 업무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A1-1 A1-3 A2-1 A2-2 A3 A4	A1-1 A1-3 A2-1 A2-2 A3 A4	보행출입구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는 장애인 휠체어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물 주출입구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여야 한다.	
A5-1 A6-1 A6-2 A7-1	A5-1 A6-1 A6-2 A7-1	차량출입구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 불허구간에는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교통영향평가와 상이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우선으로 한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 차량출입구가 지정되는 않은 필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자유롭게 차량출입구를 설치하되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접한 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	•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및 경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영향평가 상에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라야 한다. •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한다.	
		공공보행통로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블록내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블록은 시행지침에 의거 보행자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 블록내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않은 블록은 자유롭게 보행자통로를 조성하되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 유치원시설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치되도록 함	

■ 공공시설용지(공공청사, 학교, 주차장)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A5-2 A7-2 B1-3 B1-4 C2-2 C4-2	A5-2 A7-2 B1-3 B1-4 C2-2 C4-2	차량출입구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 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교통영향평가와 상이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우선으로 한다.	
		주차장	•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및 경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영향평가 상에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라야 한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획지는 시행지침에 의거 보행자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않은 획지는 자유롭게 보행자통로를 조성하되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 유치원시설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치되도록 함	

■ 기타시설용지(문화 및 집회시설,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B1-2 B2	B1-2 B2	차량출입구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 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교통영향평가와 상이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우선으로 한다.	
		주차장	•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및 경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영향평가 상에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라야 한다.	

②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주거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B1-1	B1-1	공공조경	• 도로와 건축한계선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가로환경 및 주거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지침 상의 식재기준에 의해 식재하도록 함	

■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A1-2 C1 C2-1 C3 C4-1 C5	A1-2 C1 C2-1 C3 C4-1 C5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전면공지가 지정된 가구 및 획지의 전면 도로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전면공지 폭의 2분의 1이상을 보행전용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예시 : 전면공지 폭 4m 일 경우 2m 이상 확보) • 보도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기존 보도의 높이와 같고 내구적인 장식포장을 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1층 창호 개방시 창호가 전면공지를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관련위원회에서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	•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의해 공개공지의 위치가 지정된 경우 위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형태와 규모의 적용은 제외한다. •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경산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으며, 건축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가) 진입구의 설치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용이하도록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1 이상을 진입구로 확보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자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나) 시설기준 - 공개공지는 최소 60㎡이상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식재 및 시설물의 기준은 경산시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공공조경	• 도로와 건축한계선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가로환경 및 주거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지침 상의 식재기준에 의해 식재하도록 함	
		차폐조경	• 간선도로변 완충녹지와 건축한계선에 지정된 차폐조경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지침 상의 식재기준에 의해 식재하도록 함	

■ 상업 · 업무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A1-1 A1-3 A2-1 A2-2 A3 A4 A5-1 A6-1 A6-2 A7-1	A1-1 A1-3 A2-1 A2-2 A3 A4 A5-1 A6-1 A6-2 A7-1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전면공지가 지정된 가구 및 획지의 전면도로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전면공지 폭의 2분의 1이상을 보행전용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예시 : 전면공지 폭 4m 일 경우 2m 이상 확보) • 보도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기존 보도의 높이와 같고 내구적인 장식포장을 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1층 창호 개방시 창호가 전면공지를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관련위원회에서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 공지	•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의해 공개공지의 위치가 지정된 경우 위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형태와 규모의 적용은 제외한다. •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경산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으며, 건축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가) 진입구의 설치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용이하도록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1 이상을 진입구로 확보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자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기준 - 공개공지는 최소 60㎡이상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식재 및 시설물의 기준은 경산시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공공 조경	• 도로와 건축한계선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가로환경 및 주거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지침 상의 식재기준에 의해 식재하도록 함	

■ 공공시설용지(공공청사, 학교, 주차장)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A5-2 A7-2 B1-3 B1-4 C2-2 C4-2	A5-2 A7-2 B1-3 B1-4 C2-2 C4-2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전면공지가 지정된 가구 및 획지의 전면도로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전면공지 폭의 2분의 1이상을 보행전용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예시 : 전면공지 폭 4m 일 경우 2m 이상 확보) • 보도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기존 보도의 높이와 같고 내구적인 장식포장을 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1층 창호 개방시 창호가 전면공지를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관련위원회에서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공조경	• 도로와 건축한계선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가로환경 및 주거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지침 상의 식재기준에 의해 식재하도록 함	
		차폐조경	• 간선도로변 완충녹지와 건축한계선에 지정된 차폐조경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지침 상의 식재기준에 의해 식재하도록 함	

■ 기타시설용지(문화 및 집회시설,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B1-2 B2	B1-2 B2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전면공지가 지정된 가구 및 획지의 전면도로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전면공지 폭의 2분의 1이상을 보행전용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예시 : 전면공지 폭 4m 일 경우 2m 이상 확보) • 보도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기존 보도의 높이와 같고 내구적인 장식포장을 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1층 창호 개방시 창호가 전면공지를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관련위원회에서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공조경	• 도로와 건축한계선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가로환경 및 주거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지침 상의 식재기준에 의해 식재하도록 함	

4. 경산 도시관리계획(중산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총괄 (변경있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7,034	감)973	76,061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34,691	-	34,691	45.6	
준주거지역	42,343	감)973	41,370	54.4	· 중로1-22호선 우선 개설구간의 중산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지구 추가 편입(중산2지구에서 제척)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사항으로 용도지역 편입면적 변경 (실제 용도지역변경은 없음)

※ 중로1-22호선 우선 개설구간의 중산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추가 편입(중산2지구에서 제척)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사항으로 용도지역 편입면적 변경 (실제 용도지역간의 변경은 없음)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있음)

지구단위계획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중산2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경상북도 경산시 중산동 일원	77,034	감)973	76,061	중로1-22호선 우선개설 구간에 대하여 연접된 중산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추가 편입됨에 따른 중산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감소

※ 중산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참조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① 용도지역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76,061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34,691	45.6	공동주택용지, 어린이공원, 문화시설
준주거지역	41,370	54.4	주상복합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② 용도지구 : 해당없음

③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변경있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77,034	감)973	76,061	100.00	
주택건설용지	소계	41,518	-	41,518	54.59	
	주상복합용지	17,266	-	17,266	22.70	
	공동주택용지	24,252	-	24,252	31.88	
근린생활시설용지		14,837	-	14,837	19.51	
공공시설용지	소 계	19,257	감)973	18,284	24.04	
	도로	14,782	감)973	13,809	18.16	중로1-22호선 우선개설구간 제척
	공원	4,475	-	4,475	5.88	
기타시설용지	문화시설	1,422	-	1,422	1.87	

※ 중로1-22호선 우선개설구간의 중산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① 도로 (변경있음)

■ 도로총괄표(기정)

류별		합계			1류			2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일반도로	계	4	1,107	14,782	2	613	7,775	2	494	7,007
	중로	3	1,058	14,277	1	564	7,270	2	494	7,007
	소로	1	49	505	1	49	505	-	-	-

■ 도로총괄표(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일반도로	계	4	1,107	13,809	2	613	6,802	2	494	7,007
	중로	3	1,058	13,304	1	564	6,297	2	494	7,007
	소로	1	49	505	1	49	505	-	-	-

※ 중로1-22호선 우선 개설구간의 중산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중산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에 따른 도로 편입면적 변경으로서, **실제 도로(중로1-22호선)의 선형, 연장, 폭원, 면적에 대한 변경 없음**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22	20 (10~15)	집산	564	대로2-5호선	중로1-18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4-275호 (2004.10.15)	-지구내 폭원 10~15m, 연장 564m 포함
변경	중로	1	22	20 (10.5~15)	집산	564	대로2-5호선	중로1-18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4-275호 (2004.10.15)	-지구내 폭원 10.5~15m, 연장 564m 포함
기정	중로	2	40	15	집산	150	중로1-18호선	중로1-22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4-275호 (2004.10.15)	
기정	중로	2	41	15	집산	344	중로2-40호선	중로1-22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4-275호 (2004.10.15)	
기정	소로	1	65	10	국지	49	중로1-22호선	중로2-41호선	일반		경북도고시 제2004-275호 (2004.10.15)	

※ ( )의 폭원은 중산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편입되는 폭원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22호선	중로1-22호선	•지구내 편입면적(폭원) 변경 -기정 : 폭10~15m -변경 : 폭10.5~15m •선형, 연장, 폭원 등의 변경없음	중산2지구 마을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중로1-22호선 우선개설구간(폭9.5~10m)이 중산1지구내 사업으로 편입되었으며, 동 사유로 인해 중산2지구 내 도로(중로1-22호선) 편입면적 변경

② 공원 (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4,475	-	4,475	-	
기정	76	중산 1공원	어린이 공원	경산시 중산동 230장 일원	3,199	-	3,199	경북도고시 제2004-275호 (2004.10.15)	
기정	77	중산 2공원	어린이 공원	경산시 중산동 180-5장 일원	1,276	-	1,276	경북도고시 제2004-275호 (2004.10.15)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① 가구 및 획지의 규모의 조성 (변경없음)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총계	-	77,034		77,064	
A1	A1	17,266	1	17,266	• 기존필지분할금지 • 공동개발지정(273번지외 10개 필지) • 가구전체공동개발권장 • 접한 필지와 합필가능
B1	B1	9,426	1	9,426	• 300㎡ 이상으로 분할 가능
B2	B2	2,449	1	2,449	• 접한 필지와 합필 가능
B3	B3	2,962	1	2,992	• 대지분할 권장선으로 개발 권장
C1	C1	12,806	①	12,806	• 계획획지이하 분할금지 • 공동개발지정(261번지외 55필지)
C2	C2	12,868	①	11,446	• 계획획지이하 분할금지 • 공동개발지정(406번지외 38필지)
			②	1,422	• 계획획지이하 분할금지
기 타		19,257		19,257	• 도로, 공원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총계	-	76,061		76,061	
A1	A1	17,266	1	17,266	• 기존필지분할금지 • 공동개발지정(273번지외 10개 필지) • 가구전체공동개발권장 • 접한 필지와 합필가능
B1	B1	9,426	1	9,426	• 300㎡ 이상으로 분할 가능
B2	B2	2,449	1	2,449	• 접한 필지와 합필 가능
B3	B3	2,962	1	2,962	• 대지분할 권장선으로 개발 권장
C1	C1	12,806	①	12,806	• 계획획지이하 분할금지 • 공동개발지정(261번지외 55필지)
C2	C2	12,868	①	11,446	• 계획획지이하 분할금지 • 공동개발지정(406번지외 38필지)
			②	1,422	• 계획획지이하 분할금지
기 타		18,284		18,284	• 도로, 공원

※ 중로1-22호선 우선개설구간에 대하여 중산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되어 기반시설인 도로의 편입면적이 일부 변경(감973㎡)되었으며, 가구 및 획지계획은 변경이 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①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획지)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주1	A1-①	권장용도	•주상복합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준주거지역안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용도 중 - 단독주택(복합용도 제외), 공장(아파트형 공장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액화가스판매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관련시설, 장례식장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300%, 허용용적률 : 400%	
		높이	•15층 이하	
		형태	•경사형 지붕 지정	
		건축한계선	•대로2-5호선변 : 5~8m •중로1-18호선변 : 4m •중로1-22호선변 :2m	
		배치	•대로2-5호선과 직각배치(A1-②와 공동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 A1-①과 A1-②가 접한 부분은 직각배치 제외)	
		색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대지내공지	•중로2-40호선과 접속하는 교차부(2개소) 정자마당 조성	
	A1-②	권장용도	•주상복합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준주거지역안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용도 중 - 공장(아파트형 공장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액화가스판매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관련시설, 장례식장	

도면번호	위치(획지)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300%, 허용용적률 : 400%	
		높이	•15층 이하	
		건축한계선	•대로2-5호선변 : 5~8m •중로1-18호선변 : 4m	
		배치	•A1-①과 공동건축시 대로2-5호선과 직각배치(A1-①과 공동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 A1-①과 A1-②가 접한 부분은 지각배치 제외)	
		색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② 공동주택(아파트)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획지)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공2 공3	C1-① C2-①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외 불허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200%, 허용용적률 : 250%	
		높이	•17층 이하(인센티브에 의한 3개층 추가허용)	
		형태	•경사형 지붕 지정	
		색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축한계선	•대로2-5호선변 : 5~8m •중로1-18호선변 : 4m •중로1-22호선변 : 2m	
		대지내공지	•중로2-41호선과 접속하는 교차부(3개소) 정자마당 조성	

③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획지)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근1 ~ 근8	B1 B2 B3	권장용도	•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지역·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공장(아파트형공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물 관련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300%, 허용용적률 : 400%	
		높이	•10층 이하(인센티브에 의한 3개층 추가허용)	
		색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축한계선	•중로1-22호선변 : 2m	

④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획지)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문1	C2-②	권장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불허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지역·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 공동주택,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의료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250%, 허용용적률 : 300%	
		높이	•10층 이하	
		색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축한계선	•중로1-18호선변 : 4m	

마) 간판의 크기·형태·색채·재질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획지)	계 획 내 용	비고
-	전지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름	

바)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①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	노선변 전지역	•대로2-5호선변, 중로1-18호선변 전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일부구간 예외) •대로-6호선변에 접속하는 공동주택용지 전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상기도로에서 접속하는 공동주택용지 교차부 : 20m	세부사항 도면참조

② 가감속 차로계획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대로2-5호선과 접하는 교차부	가감속 차로	•건축한계선(5~8m)을 이용한 간선가로 교차부 가감속차로 계획(폭3m)

사)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획지)	계 획 내 용	비고
-	전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울타리 허물기 일환으로 담장서리는 원칙적으로 불허(단, 울타리 설치시 1m이하의 생울타리 설치를 권장)	

아) 공개공지 등 대지내 공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획지)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주1, 공1 공2	A1 C1 C2	정자마당	•중로2-40호선과 교차하는 중로1-18호선, 중로1-22호선, 중로2-41호선 교차부(5개소) 정자마당 조성	
-	중로1-22호선 가로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한 가로변의 보행공간 및 차도 확보	
주1	A1	수림대	•대로2-5호선변 폭 5m 수림대 설치	
-	전지역	공개공지	•공개공지 지정 대상건축물은 지침에서 정한 기준이상으로 조성	

자) 인센티브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①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변경없음)

구분	적 용 대 상	적 용 비 율
기부채납	•공공의 이용에 공하는 시설부지로 제공하기 위해 무상 기부채납시	•기준용적률 × [1 + 1.5 × (제공면적 / 당초부지면적)]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1 + 1.5 × (권장용도연면적 / 건축총연면적 × 0.2)]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 [1 + 1.5 × (권장용도연면적 / 건축총연면적 × 0.2)]
대지내공지	•관련법상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공개공지 조성시	•기준용적률 × [1 + 1.5 × (공개공지면적 - 설치기준면적 / 대지면적)]
동선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를 공공통로로 조성시	•기준용적률 × [1 + 1.5 × (제공면적 / 대지면적)]

② 건축물 높이 인센티브 계획 (변경없음)

구분	적 용 대 상	적 용 비 율
기부채납	•공공의 이용에 공하는 시설 부지로 제공하기 위해 무상 기부채납시	•최고층수 × [1 + (제공면적 / 당초부지면적)] ※ 단, 인센티브에 의한 높이는 3층 이하로 함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제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6.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053-810-55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위군 고시 제2019-9호

군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군위 군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군 위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마목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계획의 개발방향을 수용하고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군위 서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군위읍 서부리 120-1번지 일원	15,174	(1983.1.19)	
변경	1	군위 서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군위읍 서부리 120-1번지 일원	15,174	(1983.1.19)	도면표시번호변경
기정	1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의흥면 이지리 산107번지 일원	718,000	군고 제2014-67호 (2014.9.29)	
변경	의2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의흥면 이지리 산107번지 일원	718,000	군고 제2014-67호 (2014.9.29)	도면표시번호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1	군위읍 서부리 120-1번지 일원	15,174	■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변경	의2	의흥면 이지리 산107번지 일원	718,000	■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나.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277	321,663	3,936,310	26	84,183	1,667,846	106	189,887	1,692,717	145	47,593	575,748
광로	-	-	-	-	-	-	-	-	-	-	-	-
대로	8	22,004	622,200	3	7,210	252,350	-	-	-	5	14,794	369,850
중로	24	68,853	1,414,511	7	51,160	1,153,310	11	16,295	244,425	6	1,398	16,776
소로	245	230,806	1,899,599	16	25,813	262,186	95	173,592	1,448,292	134	31,401	189,122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	10.5	특수도로	839	이지리 484	이지리 890	보행자도로	가온마당(피크닉장)	군고제2014-67호(2014.9.29)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소로	1	의1	10.5	특수도로	839	이지리 484	이지리 890	보행자도로	가온마당(피크닉장)	군고제2014-67호(2014.9.29)	노선명변경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580	이지리 1031-4	이지리 871	보행자도로	가온마당(피크닉장)	군고제2014-67호(2014.9.29)	
변경	소로	1	의2	10	특수도로	580	이지리 1031-4	이지리 871	보행자도로	가온마당(피크닉장)	군고제2014-67호(2014.9.29)	노선명변경
폐지	소로	2	효2	8	구획도로	82	효령면 중구리 729	효령면 중구리 729	일반도로	-	군고제25호(1997.12.2)	노선폐지
기정	소로	2	1	8	특수도로	70	의흥면 이지리 1613	의흥면 이지리 1613	보행자도로	한울마당(광장)	군고제2014-67호(2014.9.29)	
변경	소로	2	의1	8	특수도로	70	의흥면 이지리 1613	의흥면 이지리 1613	보행자도로	한울마당(광장)	군고제2014-67호(2014.9.29)	노선명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925	의흥면 이지리 963	의흥면 이지리 산105	일반 도로	삼국 유사 역사촌 (숙박 시설)	군고 제2014-67호 (2014.9.29)	
변경	소로	2	의2	8	국지 도로	925	의흥면 이지리 963	의흥면 이지리 산105	일반 도로	삼국 유사 역사촌 (숙박 시설)	군고 제2014-67호 (2014.9.29)	노선명 변경
폐지	소로	3	효8	6	구획 도로	46	효령면 중구리 202-2	효령면 중구리 730-1	일반 도로	-	군고 제25호 (1997.12.2)	노선 폐지
폐지	소로	3	우7	6	구획 도로	79	우보면 이화리 1270	우보면 이화리 1281	일반 도로	-	군고 제12호 (1993.7.23)	노선 폐지
기정	소로	3	1	3	특수 도로	276	이지리 산165	이지리 1099	보행자 도로	박사지	군고 제2014-67호 (2014.9.29)	
변경	소로	3	의1	3	특수 도로	276	이지리 산165	이지리 1099	보행자 도로	박사지	군고 제2014-67호 (2014.9.29)	노선명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	4	특수 도로	271	이지리 1062	이지리 1099	보행자 도로	박사지	군고 제2014-67호 (2014.9.29)	
변경	소로	3	의2	4	특수 도로	271	이지리 1062	이지리 1099	보행자 도로	박사지	군고 제2014-67호 (2014.9.29)	노선명 변경
기정	소로	3	3	5	특수 도로	1,113	이지리 1030	이지리 1030	보행자 도로	죽엽군 수련 마당	군고 제2014-67호 (2014.9.29)	
변경	소로	3	의3	5	특수 도로	1,113	이지리 1030	이지리 1030	보행자 도로	죽엽군 수련 마당	군고 제2014-67호 (2014.9.29)	노선명 변경
기정	소로	3	4	5	특수 도로	52	이지리 산112	이지리 산112	보행자 도로	죽엽군 수련 마당	군고 제2014-67호 (2014.9.29)	
변경	소로	3	의4	5	특수 도로	52	이지리 산112	이지리 산112	보행자 도로	죽엽군 수련 마당	군고 제2014-67호 (2014.9.29)	노선명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5	4.5	국지도로	91	이지리 산105-1	이지리 산105-1	일반도로	조성녹지(경관숲)	군고 제2014-67호 (2014.9.29)	
변경	소로	3	의5	4.5	국지도로	91	이지리 산105-1	이지리 산105-1	일반도로	조성녹지(경관숲)	군고 제2014-67호 (2014.9.29)	노선명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1	소로1-의1	노선명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노선명 변경
소로1-2	소로1-의2	노선명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노선명 변경
소로2-효2	-	노선폐지	■ 장기미집행시설 의회보고 후 해제 대상에 해당되며, 도로설치 시 하천 복개의 어려움으로 인해 금회 폐지하고자 함
소로2-1	소로2-의1	노선명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노선명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2	소로2-의2	노선명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노선명 변경
소로3-효8	-	노선폐지	■ 추후 통과교통으로서의 도로기능이 미비하고 도로와 건축선의 불일치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민원해소 차원으로 폐지하고자 함
소로3-우7	-	노선폐지	■ 미집행시설 의회보고 후 해제대상에 해당되며, 현재 창고용지로 사용되고 있고, 추후 통과교통으로서의 도로 기능이 미비하여 폐지하고자 함
소로3-1	소로3-의1	노선명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노선명 변경
소로3-2	소로3-의2	노선명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노선명 변경
소로3-3	소로3-의3	노선명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노선명 변경
소로3-4	소로3-의4	노선명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노선명 변경
소로3-5	소로3-의5	노선명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노선명 변경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읍1	주차장	군위읍 내량리 441-7	500.6	-	500.6	군고 제2009-52호 (2009.11.19)	
변경	군1							
기정	읍2	주차장	군위읍 내량리 441-10	310.4	-	310.4	군고 제2009-52호 (2009.11.19)	
변경	군2							
기정	-	주차장	고로면 양지리 66-7번지일원	8,390	-	8,390	군고 제2012-5호 (2012.2.13)	
변경	고1							
기정	1	주차장	의흥면 이지리 884일원	26,600	-	26,600	군고 제2014-67호 (2014.9.29)	
변경	의1							
기정	2	주차장	의흥면 이지리 950일원	10,600	-	10,600	군고 제2014-67호 (2014.9.29)	
변경	의2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군1	주차장	도면표시번호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군2	주차장	도면표시번호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고1	주차장	도면표시번호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의1	주차장	도면표시번호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의2	주차장	도면표시번호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총괄표

구 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기 정		변경후		기 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12	853,118	10	843,448	5	9,400	4	7,200
도시자연공원	-	-	-	-	-	-	-	-
근 린 공 원	2	426,610	2	426,610	-	-	-	-
소 공 원	1	546	1	546				
어린이공원	5	9,400	4	7,200	5	9,400	4	7,200
문 화 공 원	1	35,300	1	35,300				

구 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기 정		변경후		기 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수 변 공 원	2	373,792	2	373,792				
묘 지 공 원	-	-	-	-	-	-	-	-
체 육 공 원	1	7,470	-	-	-	-	-	-

※ 시가화구역 :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내 위치한 공원

□ 어린이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5	동부 제2호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동부리	2,200	감)2,200	-	건고 제499호 (1985.11.16)	

□ 어린이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동부제2호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폐지 - 폐지면적 : 2,200㎡	■ 미집행시설 의회보고 후 해제대상에 해당되며, 인접한 곳에 근린공원이 위치하여 있어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자 함

□ 문화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효령·고로 지구 전투 기념공원	문화공원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698-3번지 일원	35,300	-	35,300	경고 제2016-330호 (2016.12.12)	
변경	고1								

□ 문화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고1	효령·고로 지구 전투 기념공원	도면표시번호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 수변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군위내량 생태공원	수변공원	군위읍 내량리 1000번지일원	36,226	-	36,226	경고 제2010-90호 (2010.3.15)	
변경	군1								
기정	1	위천수변 테마파크	수변공원	효령면 병수리 산47-1번지 일원	337,566	-	337,566	군고 제2014-83호 (2014.12.1)	
변경	효1								

□ 수변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군1	군위내량 생태공원	도면표시번호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효1	위천수변 테마파크	도면표시번호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 체육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서부공원	체육공원	서부리	7,470	감)7,470	-	경고 제2009-107호 (2009.2.23)	

□ 체육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서부공원	■ 체육공원 폐지 - 폐지면적 : 7,470㎡	■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체육공원을 폐지하고자 함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녹지	군위읍 내량리 441-10	19,947.5	-	19,947.5	군고 제2009-52호 (2009.11.19)	
변경	군1								
기정	2	녹지	완충 녹지	군위읍 내량리 441-4	686.1	-	686.1	군고 제2009-52호 (2009.11.19)	
변경	군2								
기정	3	녹지	완충 녹지	군위읍 대북리 765-1	458.2	-	458.2	군고 제2009-52호 (2009.11.19)	
변경	군3								
기정	4	녹지	완충 녹지	군위읍 대북리 765일원	708.8	-	708.8	군고 제2009-52호 (2009.11.19)	
변경	군4								
기정	5	녹지	녹지	군위읍 대북리 765-5	189.9	-	189.9	군고 제2009-52호 (2009.11.19)	
변경	군5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군1	녹지	도면표시번호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군2	완충녹지	도면표시번호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군3	완충녹지	도면표시번호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군4	완충녹지	도면표시번호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군5	녹지	도면표시번호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1 소1	수도 공급 설비	소보면 산법리 104번지 일원	2,773	-	2,773	군고 제2015-11호 (2015.2.27)	
기정 변경	2 군1	수도 공급 설비	군위읍 수서리 389-2번지 일원	609	-	609	군고 제2008-35호 (2008.11.17)	
기정 변경	1 군2	수도 공급 설비	군위읍 내량리 441-9	245.3	-	245.3	군고 제2009-52호 (2009.11.19)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1	수도공급설비	도면표시번호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군1	수도공급설비	도면표시번호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군2	수도공급설비	도면표시번호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4) 공공 · 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공청사	군청	군위읍 동부리 228일대	24,810	증)5,264	30,074	경고 제1998-137호 (1998.6.26)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공청사	■ 면적변경 - 24,810㎡ → 30,074㎡ (증 5,264㎡)	■ 장래 공공업무시설의 확장 등 여건변화에 대비하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청사 면적 변경

나) 문화시설

□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문화시설	산촌문화휴양시설	고로면 석산리 128번지 일원	6,605	-	6,605	군고 제2009-41호 (2009.7.27)	
변경	고1								
기정	용1	문화시설	전시시설	용대리 238-7 번지일원	17,286	-	17,286	군고 제2014-4호 (2014.1.23)	
변경	군1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고1	문화시설	도면표시번호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군1	문화시설	도면표시번호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다) 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체육시설	대중골프장	군위읍 대흥리 산48번지일원	920,743	-	920,743	경고 제2013-194호 (2013.5.2)	
변경	군3								
기정	2	체육시설	골프장	산성면 운산리 산155번지일원	989,044.7	-	989,044.7	경고 제126호 (2006.4.17)	
변경	산1								

□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군3	체육시설	도면표시번호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산1	체육시설	도면표시번호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라)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용1	청소년 수련 시설	청소년 수련원	용대리 331-1번지일원	9,322	-	9,322	군고제2014-4호 (2014.1.23)	
변경	군1								

□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군1	청소년수련시설	도면표시번호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5) 방재시설

가)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저류 시설	대북리 765-5	228.4	-	228.4	군고제2009-52호 (2009.11.19)	
변경	군1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군1	유수지	도면표시번호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6) 환경기초시설

가)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환경관리센터)	군위읍 내량리 산58-1 번지일원	84,800	-	84,800	군고 제2008-269호 (2008.8.27)	
변경	군1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군1	환경기초시설	도면표시번호 변경	■ 체계적인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군위군청 도시새마을과(☏ 054-380-6242)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김천시 공고 제2019 - 261호

김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열람공고

김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이해 관계인 포함)는 본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주소, 성명, 전화번호 포함)를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14

김 천 시 장

가. 대상사업 : 부곡동 GS자이 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공사

나. 열람기간 : 2019. 2. 14 ~ 2. 28(14일간)

다. 열람장소 : 김천시청 도로교통과

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내용

종 류	명칭 (노선)	위 치	사업량	시행자	사업기간	비 고
도시계획 도로	소로 2-191호선, 2-192호선, 2-194호선	김천시 부곡동 874-7번지 일원	도로개설 L=215m B=8m	김천시장	인가일로부터 2년간	

마. 문 의 처 : 김천시청 도로교통과 도로철도계, 전화 054)420-6877. 끝.

군위군 공고 제2019-153호

군위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산19번지 일원 '군위 군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본 사업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고로면사무소 및 군위군 도시새마을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2월 14일

군 위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산1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 사업

○ 명칭 : 풍백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 설치 사업

3. 사업의 규모

○ 전체면적 : 133,680㎡

- 전기공급설비 : 38,073㎡
- 도로 : 연장 5,403m / 폭원 4m (법면제외) / 면적 95,607㎡(법면포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에스케이디앤디(주)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삼평동, ECO Hub)

5. 사업의 시행기간

○ 착수예정일 : 2019년(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1년 05월 31일(공사완료일까지)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기간 : 2019. 02. 14. ~ 2019. 02. 28.까지(15일)

○ 장소 : 군위군청 도시새마을과, 고로면사무소

○ 관계서류 : 게제생략(관계서류 등은 열람장소에 비치)

7. 의견제출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군위군청 도시새마을과, 고로면사무소에 제출

○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 의견내용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의견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 도시새마을과(☏054-380-6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군	면	리					주 소	성 명
1	군위군	고로면	가암리	산1-1	임	1,960,595	40,603	-	국 (산림청)
2	군위군	고로면	가암리	산1-30	임	3	3	경성부 황금정 2정목 148	국성의정 (사정)
3	군위군	고로면	가암리	산20	임	86,479	401	서울 강남구 도곡동527 도곡렉슬아파트 205동 1904호	이경희
4	군위군	고로면	가암리	산22	임	135,053	3,705	군위군 부계면 가호1길 209-160	박영년
5	군위군	고로면	낙전리	산12	임	88,860	1,426	부산 사상구 모라동 710-10	윤종규 외 2인
6	군위군	고로면	낙전리	산13	임	54,347	4,991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82	원도희
7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산1	임	65,058	12,151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913, 104동 902호	권세정
8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산2	임	56,727	2,179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내지길 51-5	박태호
9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산3	임	45,620	309	의흥면 파전동 480	손재은 외 1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군	면	리					주 소	성 명
10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산19	임	519,669	27,524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석산길 211	오광수
11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산148	임	70,612	7,347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영덕로 2206	윤명자
12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산149	임	24,595	5,143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997	김기열
13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산150	임	103,140	8,263	학성리 168	강상식
14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산152-1	임	146,777	11,318	100	김문환
15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산152-2	임	3	3	-	김홍락(사정)
16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산154-1	임	122,182	7,223	가암동	김화석
17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산154-2	임	3	3	-	김화석(사정)
18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산155	임	80,529	1,088	-	경주김씨 종중
계						3,560,252	133,680		

◈◈◈

포항북부소방서 공고 제2019 - 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타절 기성검사를 위한 입회 요청을 통지 하였으나, 우편(등기)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2월 14일

포 항 북 부 소 방 서 장

1. 제 목 : 기계119안전센터 신축공사 타절 기성검사 현장 입회요청 통지

2. 공고기간 : 2019. 2. 14. ~ 2019. 2. 28.(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당사자	**성명 (명칭)**	㈜창대건설이앤씨(대표자 : 한석희)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204(형곡동)

4. 송달내용

○ 타절 기성검사 공사현장 입회 요청

○ 타절 기성검사에 따른 관련 서류(자료) 제출

5. 타절 기성검사

○ 일시 : 2019. 03. 05.(화) 14:00

○ 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지가리 248-7(기계119안전센터 신축공사 현장)

6. 기타사항

○ 2018. 03. 07.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던 “기계119안전센터 신축 공사” 건에 대해 계약불이행에 따라 2019. 01. 09.계약해지를 하였으며, 2019. 03. 05. 14:00 타절 기성검사를 실시 하고자 하오니 관련 서류(자료) 제출 및 입회하여 주시기 바라며,

○ 부득이 상기 일정에 참석이 곤란하여 일정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사전에 의견을 통보(문서, 팩스문서 포함 등) 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보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타절 기성검사 결과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 문의처

- 주 소 : 포항북부소방서 소방행정과〈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2(덕산동)〉

- 연락처 : 전화 054-260-2143, 팩스 054-260-2129

- 담당자 : 이윤수

새바람 행복 경북!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韓세상